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6. 10. 17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목포과학대학교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2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교육기관의 명칭은 “목포과학대학교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교육원은 목포과학대학교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원장) 교육원의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전임교원) ①교육원은 1인 이상의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②목포과학대학교 전임교원은 본 교육원의 전임을 겸할 수 있다.

③전임교원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며, 재임용 할 수 있다.

④위촉기간이 만료 시 재 위촉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

제6조(외래 교수요원) ①교육원장은 자격기준에 따라 외래 교수를 위촉한다.

②임기는 1년이며 재임용 할 수 있다. 단, 위촉기간이 만료 시 재 위촉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

제7조(전담 행정요원) ①교육원은 전임 행정요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전담 행정요원은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③전담 행정요원의 근무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육훈련 운영

제8조(교육과정) 교육원에 설치하는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교육과정(별첨1)
2. 경력자 교육과정
3.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4. 노인복지법 부칙에 따른 승급과정

제9조(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①양성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신규자), 경력자 및 국가자

격(면허)소지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표준과정교육 : 자격 제한 없이 240시간으로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 실습(시설) 40시간, (재가) 40시간으로 이루어진다.
2.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는 실기 및 실습을 50% 면제 받을 수 있다.
3.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 1) 간호사 : 이론 26시간, 실기 6시간, 실습 8시간 총 40시간
 - 2) 사회복지사 : 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 실습 8시간 총 50시간
 - 3)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이론 31시간, 실기 11시간, 실습 8시간 총 50시간

②승급과정은(구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 요양업무 경력 1년(1200H)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1. 경력자 : 총 60시간 교육으로 이론 40시간, 실기 20시간으로 이루어진다.
2. 무경력자 : 총 120시간 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 실습 40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교육원 운영위원회를 두어 교육 계획 수립, 교재 편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4장 등록 및 수강

제11조(교육대상자 선정) 등록기간 중 교육 신청서를 제출 받아 교육과정별로 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육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명단을 작성하여 관할 시, 도에 보고한다.

제12조(전형방법) 교육생의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 등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생 등록)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4조(수강료 징수) ①교육생은 등록 시기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본원의 수강료는 교육과정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강료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2. 제적, 자퇴자의 경우 수강료는 법정 정산하여 반환한다.
3. 교육원 사정으로 교육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5장 학사관리

제16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각 과정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교육의 수료) ①본원의 교육과정 수료는 요양보호사 운영지침에 따라 정한다.

②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한다.

③교육생 중 출석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 기준에 미달 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현장실습은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고, 실습 지도교사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해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합격자로 인정한다.

제19조(제적) 교육생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료 교육받게 한 때
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3. 질병 및 기타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한 때

제20조(현장실습) ①교육원장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습연계 가능 기관인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과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다.

②현장실습기관은 교육생의 현장실습을 위한 지도 교사를 지정 관리한다.

③현장실습 시 본원의 전임교원은 실습교육의 운영여부를 평가한다.

제6장 학생관리

제21조(자치활동) 교육원장은 교육 기간 중 교육생 중에서 학생장 및 간사 등을 선출하여 필요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시설 이용) 교육생은 교육원에서 설치한 각종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수업운영) ①교육생은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교육실시 5분 전에 강의실에 입실해야 한다.

②원장은 수시로 교육생의 수강 자세를 점검할 수 있다.

③근태사항 점검은 출석부에 의하여 수업시간마다 점검한다.

제24조(교육생 준수사항) ①교육원 내에서는 고성방가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반 교육시설물과 반납을 조건으로 지급된 물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③기타 교육원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교육생 활동 금지) 교육생은 본원의 교육기간 중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 행동,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6조(출석관리) 교육생의 출석은 매 교시마다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 수업 시간의 20%이상 결석 시 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사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27조(재정수입) ①교육원의 재정 수입 및 운영비는 수강료, 기부금, 주무 관청이 인정하는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자체 수입은 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학습비, 위탁 교육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목포과학대학교 보조금과 기타수입을 재정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회계) 교육원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며,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9조(회계보고) ①교육원의 회계보고는 별도 세부규정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대학 내 회계보고는 2월 말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제39조의2 제5항 관련)

1. 등급별 교육과정

가. 양성과정

■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기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호간호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시설·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건강관리, 스트레 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노년기 특성(생리·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실기)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돕기 •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효율적 의사소통 •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 여가활동 돕기(TV시처,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 계획 변경지원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필요성 • 업무 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죽음 및 임종단계 • 호스피스의 개요 •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기술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기본 소생술	4	6
	소계			80	80
현장 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Ⅰ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Ⅱ		40	
	소계			80	
총 ① + ② + ③				240	

■ 경력자 교육과정

- 표준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80시간) / 실기(4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6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2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4	3	
			- 배설 요양보호	5	3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5	3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6	3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3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4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3		
		서비스 이용지원	3	2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3		
			치매 요양보호 기술		6	5
			임정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 기술		3	2
			응급처치 기술		4	4
	소계			① 80	② 40	
	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Ⅱ		20		
소계			③ 40			
총 ① + ② + ③				160		

■ 국가자격(면허)소시자 교육과정

①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26시간) /실기(6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기본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2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8	
총시간			40	

②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32시간) /실기(1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10	4
	기본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4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2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8	
총시간			50	

③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26시간) /실기(6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기본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서비스 이용지원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4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8	
총시간			50	

■ 노인복지법 부칙에 따른 승급과정

- 경력자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요양 보호 기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2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시설·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건강관리, 스트레 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5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5	4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3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3	1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	1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돕기 - 이송 돕기	3	2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감염예방 및 욕창 예방 - 흡인	2	2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3	1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보고 방법	2	1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 요양보호 기술	•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대처 •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3	3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 기술	• 죽음 및 임종단계 • 호스피스의 개요 •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2	2
		응급처치 기술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기본 소생술	2	2
	소계			① 40	② 20
	총 ① + ②			60	

- 무경력자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40시간) / 실기연습 (20시간)	요양 보호 기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2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시설·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건강관리, 스트레 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5	4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5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3	4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3	4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	4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돕기 - 이송 돕기	3	4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감염예방 및 욕창 예방 - 흡인	2	2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3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보고 방법	2	3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 요양보호 기술	•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대처 •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3	5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 기술	• 죽음 및 임종단계 • 호스피스의 개요 •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2	3
		응급처치 기술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기본 소생술	2	4
		소계			① 40
	현장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Ⅰ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Ⅱ		20	
총				120	

2. 경력증명발급기관

-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자익요양기관
-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⑦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 ⑧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해당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방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국기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㉔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소개·알선) 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 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 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㉕ 노인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근로파견사업의 경우 시·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 납세증명, 보수입금 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시·도 판단 하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 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

3.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한다.

(2)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